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25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대통령령 제1948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정하여”를 “정하고,”로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 제14조제1항 본문중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로, 동항 단서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관련서류”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4항에 따라”로, “입찰금액심사 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로 하고, 동조제7항중 “50억원”을 각각 “100억원”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 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

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용역계약”을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약의”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기관”을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을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으로 하고, 동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바목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

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애계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계약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10일”을 “7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

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중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조합”을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 제4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2항) 단서중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

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3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

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5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42조제1항 단서”를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제59조중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을 “자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계약금액”을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중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5호중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을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로 하며,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를 “실시설계서”로, “당해 설계서상의”를 “해당 실시설계서상의”로, “설계서상의”를 각각 “실시설계서상의”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二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7조제1항중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을 “최대 4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90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중 “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4호의2·제10호·제14호·제14호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저가로 낙찰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입찰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원을 부당교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영 제13조제

1항)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실시와 맞추어 공사의 난이도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확대하여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工種)의 공사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영 제14조의2 신설)

(1)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규모 등으로 보아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장설명이 발주기관의 청사에서 실시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실시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설명은 반드시 실제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함.
- (3)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이 실시됨에 따라 적정한 입찰금액의 산정 및 공사의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현장설명을 아니하게 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영 제42조제4항 신설)

- (1)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 현재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하도록 함.

라.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영 제52조제2항 신설)

- (1)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

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자의 경영사정 등의 변경으로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2)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에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 (3) 계약이행보증방법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영 제76조제1항 제4호의2 및 제16호 신설)

- (1)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리원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적정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감리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현행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외에 중앙관서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괄입찰이 남발되고 있음.

(2)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25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대통령령 제19484호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을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명예시장·군수가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